

#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

(서윤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1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2022년 03월 10일

발 의 자 :서윤기 의원(1명)

찬 성 자 :김정태, 김제리, 김창원,  
김태수, 김평남, 김혜련,  
김희걸, 박기열, 박상구,  
박순규, 성흠제, 송아량,  
이영실, 이정인, 임종국,  
장상기, 전병주, 전석기,  
최웅식, 홍성룡, 황규복  
의원(21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5가 개정되어 국제영화제의 개최·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음. 그러나 서울특별시 현행 조례에는 국제영화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임.
-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제정 조례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영화제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,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로의 위상을 확립하여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함(안 제1조·제2조)
- 나. 국제영화제에 대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명시함(안 제3조·제6조)
- 다. 조례의 대상이 되는 국제영화제의 적용 범위를 명시함(안 제4조)

- 라. 국제영화제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국제영화제의 개최·운영에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을 확보할 것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국제영화제에 관한 민·관·학 협력체계 구축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규정함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5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영화제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,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로의 위상을 확립하여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제영화제의 위상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국제영화제에 적용한다.

1.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하는 국제영화제로서 법인일 것
2. 지원 직전 연도까지 3회 이상 개최된 국제영화제일 것
3. 개폐막일을 포함하여 행사기간이 5일 이상일 것
4. 당해 연도 상영 작품이 10개국 이상 및 100편 이상이어야 하며, 해외

영화 상영 비율이 50% 이상일 것(이 경우 장·단편 구분 없이 1편으로 산정한다)

5. 모든 외국어 영화는 한국어 자막, 모든 한국어 영화는 영문 자막을 기본으로 제공할 것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제영화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6조(자율적 운영의 보장) 시장은 국제영화제의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) ① 시장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·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·상영
2. 국제영화제 영화 상영에 따른 부대행사의 개최
3. 국내외 영화 제작·배급
4.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
5.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
6. 영화·영상과 관련 마켓 행사의 개최
7. 그 밖에 시장이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국제영화제의 개최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「서울특별시 지방보

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국제영화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력체계의 구축) ① 시장은 국제영화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·관·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